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 
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18
----------	-----

2016.7.20.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12일

(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전원건)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,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○ ‘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’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품을 상설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동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향후 상설전시판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

- (제 정) 1995-03-31 조례 제 2185호  
(전문개정) 2007-08-10 조례 제 3022호  
(일부개정) 2010-11-05 조례 제 3292호  
(일부개정) 2013-03-29 조례 제 3543호  
(일부개정) 2014-08-08 조례 제 3687호  
(일부개정) 2014-10-31 조례 제 371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은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87번지길 10-2(울량동 877)에 둔다.

**제3조(기능)**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품 및 농·축·수산물 등의 전시·판매 및 이를 위한 매장 제공
2. 농촌특산품 제품 및 농·축·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상담창구 역할
3. 농촌특산품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전시·판매행사 개최 등 판촉·홍보
4. 농촌특산품 제품 및 농·축·수산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
5. 농촌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
6. 기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4조(전시·판매품목)**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1. 5>

1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 특산단지 제품
2. 도내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
3.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공식품 포함)과 생활필수품(단, 생활필수품의 판 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)
4. 비교 전시·판매를 위한 타 시·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 (단,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
**제5조(운영의 위탁)**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 또는 도내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·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,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,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위탁의 취소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~ 4. 삭제 <2014. 10. 31>

**제8조(사용료)**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

②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기, 납부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9조(관리운영비)**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보고 및 검사)** 도지사는 전시판매사용자의 운영상태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준용)**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3조(운영규정)**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사용요율의 적용시한) 이 조례 제8조의 사용요율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 (2007. 8. 10 조례 제3022호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#### 부 칙 (2010. 11. 5 조례 제329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2013. 3. 29 조례 제354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단체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 (2014. 8. 8 조례 제368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2014. 10. 31 조례 제371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